

EU CBAM 현황과 지원 사업 안내

배출량평가부장 송주화



목차

Contents

1. 제도 개요
2. 주요이슈 사항
3. 한국환경공단 기업지원



1

제도 개요

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(EU CBAM) (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)



01 제도 개요

Why?

1.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, 무엇을 위해, **세계최초로** 도입하여야만 했나?
2. EU CBAM 은 **무엇**이며,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가?
3. **일정**은 어떻게 진행되는가?

01 제도 개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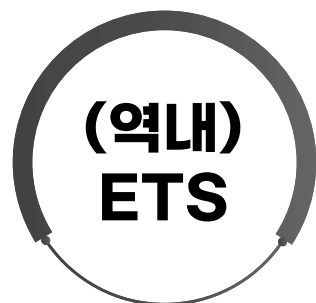
기존

- 유럽 배출권거래제(ETS)는 탄소누출로 과도기적 무상 할당 중
- 제도의 탄소가격을 약화시켜 **추가감축**을 위한 **투자**에 영향



변경

- CBAM 도입으로 수입품과 역내제품의 **동등한 탄소가격** 가능
-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의 유상할당 전환 및 본궤도진입



ETS를 알아야
CBAM이 보인다

01 제도 개요

01

EU CBAM이란?

탄소감축+공정경쟁 EU 규제

- EU 수입업체에 대하여 제품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EU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탄소 비용 차이만큼 CBAM 인증서(관세) 구매 의무화하는 조치

02

CBAM 대상

철강 등 6개 품목

- 철강, 알루미늄, 시멘트, 비료, 전기, 수소 등 6개 부문 대상
- 전환기간(~'25년) 중 확대 가능성 有

03

단계적 운영

전환기간('23.10.1~) 확정기간('26.1.1~)

- 전환기간 : 분기별 배출량 보고
- 확정기간 : 연 1회 배출량 보고 + 제3자 검증

04

이행 주체

EU 역내 수입 및 역외 수출업체

- EU 역내 수입업체 : CBAM 배출량 보고서 제출 (전환), CBAM 신고/인증서 제출(확정)
- EU 역외 수출업체 :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 (수출업체 자체 공정 + 전구물질)

01 제도 개요

CBAM 배출량 산정 대상

제품 생산과 직/간접적 연관

- 제품 생산과정: 연료/원료 사용 (직접배출), 전기 사용 (간접배출)
- 중간재 생산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누적 합산

보고 대상 온실가스

이산화탄소(CO₂)가 기본

- 철강, 시멘트, 전기, 수소 : CO₂
- 알루미늄 : CO₂, PFCs (제련)
- 비료 : CO₂, N₂O

전구물질 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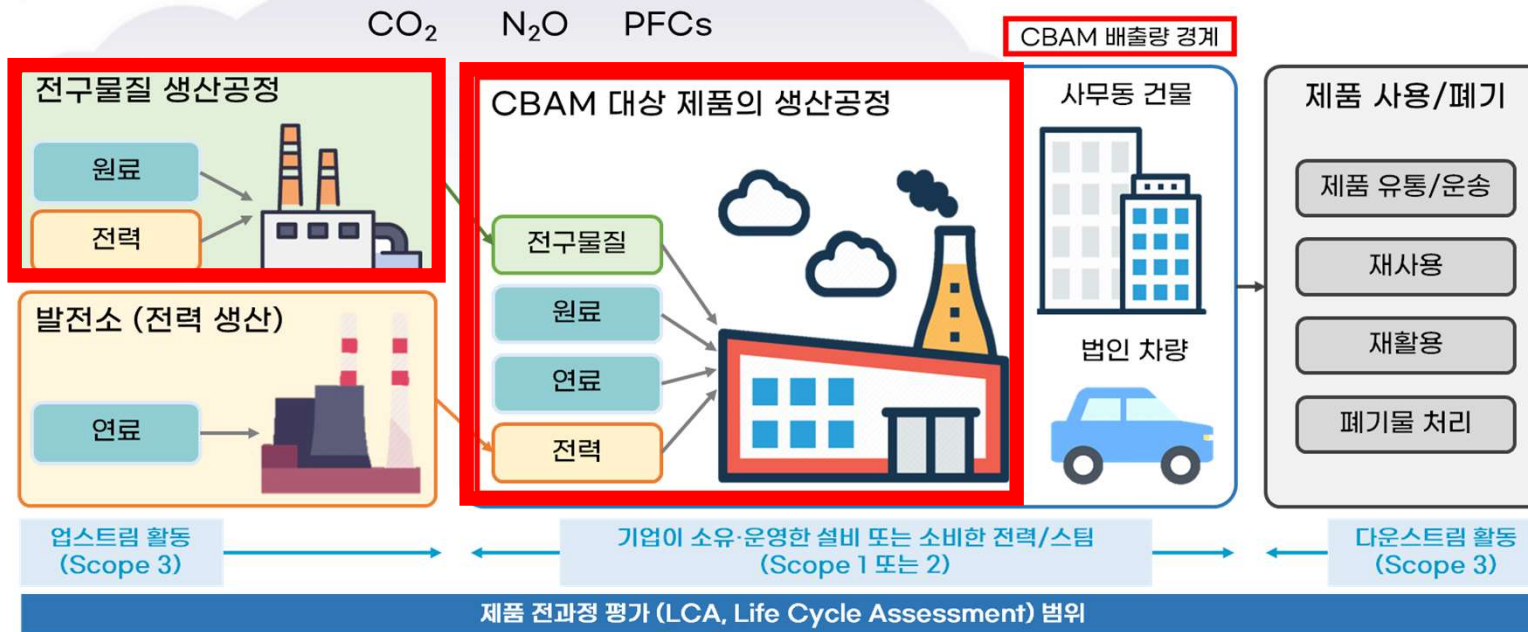
- 전구물질: 석회석, 유연탄 등 자연물질 외 가공정을 거친 물질 (소결광, 알루미늄 과)
- 전구물질은 CBAM 이행규정부속서 II 제시 (= CBAM 대상 제품 중 하나)

국내 제도와 CBAM 차이

국내 제도 : 사업장 단위
EU CBAM : 제품 단위

- 바이오연료 인정범위 (RED 2)
- 공정구분에 따른 계측 방식 인정 여부

Embedded Emission (내재배출량) Specific Embedded Emission (제품당 배출 원단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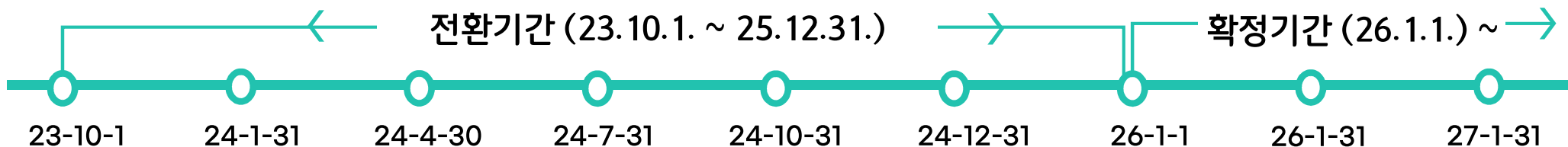
제품 탄소 발자국(PCF, Product Carbon Footprint)

01 제도 개요



1. **우리제품 배출원단위** – EU제품 배출원단위 = (A)
(tCO₂e/t제품) (ETS 무상할당)
2. (A) * **우리제품 수출량** = (B)
3. (B) * EU 배출권가격 = (C)
4. (C) – **우리나라 탄소가격** = 부과금

01 제도 개요



구분		전환기간	확정기간
대상 품목		철강, 알루미늄, 비료, 시멘트, 수소, 전기	전환기간 6개 품목 외 확대 가능성 有
의무 사항	보고 의무	CBAM 보고서 제출 (배출량 산정 결과만 포함)	CBAM 신고서 및 인증서 제출 (배출량 산정 결과 + 인증서 포함)
	검증	검증 불필요 (의무 아님. 자발적 검증* 가능) * EU에서는 전환기간 CBAM 검증은 ISO 14065로 인정된 검증기관 수행 권고 (국내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13개의 ISO 14065 검증기관 有)	현장검증(연 1회) 및 검증보고서* 제출 의무 * `25년 중 EU 집행위에서 검증기관 인정 요건 관련 별도 위임규정 채택 예정
보고 주기		분기별 보고 (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)	연 1회 보고 (차년도 5월 31일까지)
과징금		CBAM 보고서(배출량) 미제출 또는 부정확/불완전한 보고에 대해 10~50유로/CO ₂ e* 만큼 부과 * EU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상승	CBAM 인증서 미제출 시 부과

2

주요이슈사항



02 주요이슈사항



- 제도근간을 결정하는 주요규정 미확정 및 연기
 - 대상(하위제품, 他품목) 확대 (24 4Q, 25 3Q)
 - 확정기간 산정방법 (25 2Q~3Q)
 - 기지불탄소가격 (25 2Q)
 - 검증 상호인정 범위 (24 4Q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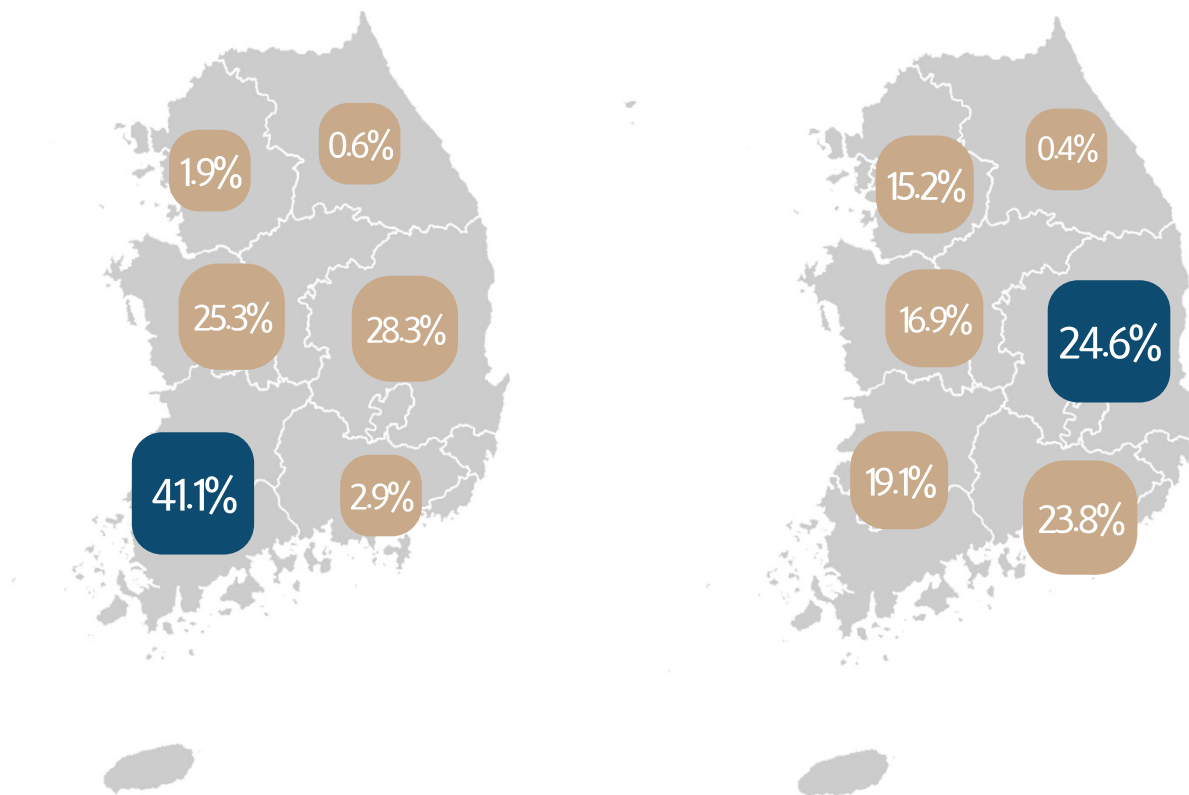
간접배출 / 석유화학 / 운송포함여부

국내검증기관 인정, 기본원단위 인정도 중요

02 (참고) CBAM 영향기업 분포



ETS 온실가스 배출량은 호남권이, 생산액은 대구경북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
배출량과 생산액 비중이 다른 권역은 다배출기업(ETS)외 CBAM 기업으로 추정



* 한국은행. (2023).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지도를 활용.

02 주요이슈사항

형평성

(대상) CBAM 대상은 EU ETS보다 소규모도 해당

(산정방법) 공정구분/계측수준/바이오 인정범위

(자료보안) 배출원단위/기업정보보호/검증



자국 산업보호를 위한, EU 눈높이의 제도

개별기업이 아닌 정부간 협의를 통한 조정 필요

02 주요이슈사항



(대기업) 경제성 우선으로 대규모 다배출시설 존재

(중소) 대기업보다 생산공정의 저탄소화 부족

(K-ETS) 유상할당 및 탄소가격 낮음



업스트림 기업의 배출원단위가 곧 국가경쟁력

영세기업의 저탄소 인식도 향상 필요

3

한국환경공단 기업지원



03 한국환경공단 기업지원



(설명회) 권역별 정부합동설명회 개최

* 경남권(24.4), 수도권(5), 충청권(7), 호남권(10), 수도권(11)

(안내서) 생산기술연구원, 환경과학원 [\(해설서\)](#) 환경공단

* Kotra, 무역협회에서도 다양한 제도 안내서 발간

(상담창구) 제도개요- 생기원, [산정보고](#)- 환경공단

* 통합안내번호 운영중 1551- 3213

(현장지원) 현장방문을 통한 취약기업 맞춤 컨설팅

* 중진공은 재정보조(90%), 환경공단은 [무상 기술지원](#)(100%)

(R&D) 수소환원제철 등 신감축기술에 대한 연구지원

03 한국환경공단 기업지원

상담
창구

EU CBAM 헬프데스크 설치 운영(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)

(유선) 배출량 산정방법 상담 ☎ 1551-3213

(방문) 이메일 사전접수 > 일정 협의 > 방문

E-mail: CBAM-Help@keco.or.kr

(온라인) 네이버 카페 “CBAM 온라인 헬프데스크”



EU CBAM 정보제공

(관련자료)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내 자료실 공간 마련

(월간 정보지) 이메일 제공시 매월 발송

* 메일 본문에 이름, 업체명, 부서, 연락처 제시



CBAM 참고자료 QR코드

03 한국환경공단 기업지원

방문
컨설팅

EU CBAM 대응 기업지원(온실가스 전문기관)

(기간) 2024. 5 ~ 12 (8개월)

(대상) CBAM 업종 제품생산에 관련된 중소중견 기업 (60개사)

(절차) 사전준비(~5월) - 공개모집 및 선정(6~8) - 컨설팅(8~11) - 결과제공(12월)

(지원내용) ① CBAM 대상제품의 배출량 산정, ② EU 요구 서식에 맞도록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③ 기업, 담당자 배출량 산정



03 한국환경공단 기업지원

25년 계획

(안내) 온/오프라인 상담채널 다변화, 후속규정 반영한 해설서 개정

(교육) 기업담당자, **컨설턴트** 역량강화 (**신규**)

(컨설팅) 공급망중 **전구물질** 중견기업 위주 (**보완**)

(K-ETS) 해외탄소규제 지원을 위한 국내제도 개선

- 수소환원제철에 필수적인 CCS 방법론 최초 규정화(24년)
- 유럽기준의 바이오연료 인정범위 보완(ISCC)

감사합니다!

